



# 편집지침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 1. 표제의 원칙

### ▲ 2011-1104 신문윤리강령 위반

####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 <주문>

朝鮮日報 2011년 4월 4일자 1면 「장관 3명 처형/평양은 숙청중/박남기 이어 김용삼 前 철도상·문일봉 前 재정상도」라고 한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이 작년 6월 김용삼 전 철도상(장관급)을 간첩 혐의로, 문일봉 전 재정상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몰어 모두 처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용삼 처형에 대해 “맞다”고 했고, 문일봉 처형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용삼 철도상(1998~2008년)은 2004년 4월 김정일 특별열차를 노린 것으로 알려진 평북 용천역 폭발 사고에 연루된 혐의로 처형됐다. 김용삼이 중국에서 돌아오던 김정일 열차의 용천역 통과 시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일 열차의 동선(動線)은 친위부대와 비서실 외에 철도상만 알 수 있다고 한다.

문일봉 재정상(2000~2008년)은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함께 화폐개혁 실패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4월 경제 사령탑이던 박남기를 같은 혐의로 총살했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문일봉은 박남기와 달리 화폐개혁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민심이 워낙 나빠 처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군수경제 담당) 산하 간부 20여명도 작년 말 횡령 등의 혐의로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 간부들은 무기 수출 대금 중 일부를 빼돌리다 국가안전보위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해외 무기수출권을 보유한 군부의 오랜 실세들을 겨냥한 숙청이란 얘기도 들린다”고 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후계 세습과 화폐개혁 실패가 맞물린 작년 초부터 평양에 ‘숙청 바람’이 불고 있다”며 “김정일이 권력 세습의 걸림돌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 6월 김용삼 전 철도상을 간첩 혐의로, 문일봉 전 재정상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 당국자는 김용삼 처형에 대해서는 “맞다”고 밝혔고, 문일봉 처형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기사대로라면 문일봉의 처형은 미확인 상태이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김용삼과 문일봉 2명에다 작년 4월 처형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합쳐 「장관 3명 처형」이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과장보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06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주문〉

한국경제 2011년 3월 29일자 1면 「“국방개혁 반대하면 옷 벗기겠다”/靑, 개혁안 상반기 법제화」라고 한 제목, 4월 7일자 1면 「과학벨트, 경북에 나눠줄 듯/MB, 대구시장·경북지사 만나」라고 한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월 29일자〉=『정부는 군의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비역 장성과 일부 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방안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라며 “법령 정비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대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사는 대목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국방개혁과 관련해 누구든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 군과 방산 시스템 개혁만큼은 완료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개혁안 법제화는 작년쯤 했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한다고 해도 빨리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후략)』

〈4월 7일자〉=『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비공개 오찬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대구·경북지역 민심

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이 대통령을 비밀리에 면담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구·경북 분산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일부 참석자가 전했다. 청와대는 부인했다.

김 시장과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지역 주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뒤 “정부가 지방 발전 정책에 더욱 촘촘하게 신경 쓸 것”이라며 “신공항은 안 됐지만 지역발전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역발전 방안과 신공항 백지화 이외의 과학벨트 등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7일 허남식 부산시장에 이어 영남권 의원들과도 면담 일정을 잡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위 <3월 29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에 대한 군내 일부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국방개혁과 관련해 누구든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인사조치할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방개혁 반대하면 옷 벗기겠다”고 큰 제목을 달았다.

이는 ‘신문의 표제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4월 7일자> 기사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과 만나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대구·경북 분산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일부 참석자가 전했다. 청와대는 부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편집자는 「과학벨트 경북에 나눠줄 듯」이라고 본문에도 없는 내용

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이는 편집자의 선부른 예단에 맞춘 과장된 제목으로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125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 〈주문〉

東亞日報 2011년 4월 28일자 D1~2면 「아껴둔 땅 광주, 과학벨트의 씨앗을 뿌리자/광주전남권 4곳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 53곳 발표…오늘 10곳으로 압축」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후보지 53곳에는 광주 전남권이 제안한 지역 4곳이 모두 포함됐다.

광주시는 최근 광산구 평동 군훈련장 이전 예정지와 진곡산단 부지, 광주 연구개발(R&D)특구 내 첨단산단 3지구 부지, ‘빛그린산단(광주전남공동국가산단)’ 부지 등을 후보지로 선정해 건의했다. 함평군 월야면 일대가 포함된 빛그린산단 부지는 행정구역상 전남도에 속하지만 광주권에 근접해 사실상 광주권 4곳이 모두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2차 입지평가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10개 안팎으로 압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1차 선정을 계기로 ‘왜, 광주 전남에 과학벨트 본원을 뒀야 하는가?’를 포인트로 대국민 대정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999년 1136억 원 매출규모로 시작한 광(光)산업이 지난해 2조 5400억

원으로 성장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기술 → 산업화’의 신모델을 창출한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광산업 성장기 투자액 규모는 국비 4847억 원에 광주 시비 1287억 원, 민간투자 2334억 원 등 모두 8468억 원이었다. 여기에 연구 부문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광주에 자리잡은 사실도 장점으로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올해 지정된 광주 연구개발(R&D)특구가 기초과학의 응용 및 개발연구는 물론 사업화 추진을 용이하게 해 줄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점도 꼽고 있다.(중략)

이와 함께 과학벨트 예정부지의 가격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확보 용이성’ 측면에서 부지면적과 사용가능 시기 가격 등에서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지반 안정성’ 부문에서도 월등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東亞日報가 제작한 8면짜리 「광주과학벨트」 섹션의 메인 스트레이트로 정부가 4월 25일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 53곳에 광주·전남권이 제안한 4곳이 모두 포함됐으며, 정부는 4월 28일 후보지를 10곳 안팎으로 압축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아껴둔 땅 광주, 과학벨트의 씨앗을 뿌리자>라고 특정 ‘성명서’나 홍보 전단 등에서나 볼 법한 표현으로 달았다.

위 기사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충청과 영남, 호남의 많은 지역들이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펼쳐 왔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독자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작성된 불공정한 의견성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항(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2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동 화

〈주문〉

서울신문 2011년 5월 16일자 12면 「‘성폭행 혐의’ 스트로스칸 기내서 긴급 체포/파렴치한 IMF총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62)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뉴욕경찰은 이날 JFK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 직전의 파리행 여객기 안에서 스트로스칸 총재를 전격 체포, 경찰서에 구금한 채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그는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소피텔 뉴욕’ 호텔에서 객실 청소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 객실 청소원 라이언 세사(32)는 이날 오후 1시쯤 스트로스칸의 방(하루 숙박료 3000달러)이 비었으니 청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욕실에서 갑자기 스트로스칸이 나체로 나타났다. 그는 놀라서 복도 쪽으로 달아나려는 세사를 침대로 끌고 와 성폭행을 시도했다. 저항하는 그녀를 그는 욕실로 끌고 갔고 몸싸움 끝에 그녀는 방을 탈출했다.

뉴욕경찰의 폴 브라운 대변인은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스트로스칸이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남기고 호텔을 나선 뒤였으며 그가 서둘러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뉴욕·뉴저지 항만관리청 직원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고 공항에서 오후 4시 40분발 프랑스행 에어프랑스 비행기에 탑승한 채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스트로스칸을 이륙 10분 전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 브라운 대변인은 “그는 성범죄, 강

간 미수, 불법 감금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15일 뉴욕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트로스칸 총재의 변호인인 윌리엄 테일러는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AFP에 밝혔다. 프랑스 정부도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본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2007년 11월 취임한 스트로스칸은 2008년 부하 직원인 IMF 아프리카지부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또 자신이 고가의 주택과 자동차, 미술품은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단사로부터 수제 양복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럽다고 보도한 프랑스 신문을 상대로 소송하는 등 거둬들 구설수에 올랐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위 기사에서 스트로스칸 IMF총재가 미국 뉴욕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큰 제목을 「파렴치한 IMF총재」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하지만 위 기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스트로스칸 총재의 혐의에 대한 현지 경찰의 수사는 초기 단계일 뿐이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스트로스칸 총재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성급한 예단에 따른 과장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151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 〈주문〉

朝鮮日報 2011년 5월 24일자 A6면 「“민노총이 노리는 ‘알박기 파업’...부품

사 10군데 더 있다”/경총·현대차 우려 목소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18일부터 시작된 유성기업 노조 파업이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현대·기아차는 26일부터 주력 차종인 쏘나타와 K5를 비롯해 쏘타페·베라크루즈·투싼ix·쏘렌토·스포티지 등 대부분의 차종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GM도 30일 이후에는 쿠루즈·올랜도·알페온 등 7개 차종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르노삼성의 SM5 2.0모델(6월부터)과 쌍용자동차 체어맨(8월부터)도 마찬가지다.

완성차 업체의 가동 중단은 5000~6000개 부품업체들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일본 대지진에서 학습한 것을 응용한 전형적인 ‘알박기 파업’이다”고 말했다.

3·11 일본 대지진으로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시설이 파괴됐다.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일본의 8개 모든 완성차 업체의 가동이 일정 기간 중단됐을 뿐 아니라, 미국의 GM·포드·크라이슬러의 일부 공장 가동도 중단됐다. 세계 자동차업계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그 피해에서 비껴나 있었다. 부품 국산화율이 97%에 달해 일본으로부터 조달하는 핵심 부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유성기업 노조 파업은 한국 자동차산업 내부의 서플라이체인에 타격을 가한 것이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피스톤링과 실린더 라이너 등을 생산한다. 특히 피스톤링의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 수요량의 80%를 담당한다. 이곳이 막히면 국내 자동차업계 생산 전체가 차질을 빚는 대표적인 병목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계는 ‘알박기 파업’은 터무니없다며 반박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2

일 “이번 파업은 오래전부터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의도된 파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우선 유성기업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발레오·동희오토 등 다른 부품회사 해고 노동자 등 외부 세력도 수십명 참가하고 있다. 또 2008년 4월 정갑득당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인천에서 열린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쟁의기금 20억원만 있으면 핵심부품 공장 가동을 중지시켜 완성차 4사를 한 달 정도 생산 중지시키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가 한국 자동차업계 부품조달 구조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타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유성기업 파업의 파급 효과를 확인한 노동계가 유사한 파업을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만 5000여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중 유성기업처럼 특정 부품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곳이 10여 개 사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어링과 캠 샤프트 등이 그런 부품에 속한다.

한국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피스톤링처럼 단가가 아주 낮은 부품은 규모가 작아 여러 업체가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라면서 “현재로선 주요 부품 업체가 파업하면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은 위 기사에서 자동차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링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생산업체의 생산라인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정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의 파업으로 해당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이른바 ‘알박기 파업’일 가능성에 대한 공방을 소개했다.

기사는 한국경총 관계자가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일본 대지진에서 학습한 것을 응용한 전형적인 ‘알박기 파업’이다”라고 말했지만 민주

노총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오래전부터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이라면서 ‘알박기 파업’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유성기업 파업의 파급 효과를 확인한 노동계가 유사한 파업을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발언과 함께 <실제로 2만5000여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중 유성기업처럼 특정 부품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곳이 10여개 사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민노총이 노리는 ‘알박기 파업’…부품사 10군데 더 있다”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민주노총이 ‘알박기 파업’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데다 기사 본문에는 <“…노동계가 유사한 파업을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만 돼 있음에도 제목은 민주노총이 독점적 특정부품 생산업체 10여 곳의 ‘알박기 파업’을 노린다고 말한 것처럼 한 발 더 나아가 버린 것이다.

이는 편향된 시각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152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 <주문>

한겨레 2011년 6월 17일자 8면 「182억 들여 ‘무상급식 투표’…오세훈의 몽니/보수단체, 주민투표 청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16일 서울시에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20일 이후 만 19살 이상 서울시 주민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50% 단계별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두고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도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아 큰 진통이 예상된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터에 거액을 들여 주민투표를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복지포폴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주민투표를 공식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인 41만 8000명을 훨씬 넘는 80만 1263명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올 초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조례 공포에 반발해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가 청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가 복지 포폴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서명운동 기간에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서울시 위탁기관 등에 대한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서명 활동이 있었다는 사례가 제보되었다”며 “이의신청 기간에 시민단체와 함께 직접 서명부의 대리서명과 유령서명 등 불법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의 강희용 민주당 전략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는 서울시 예산 182억 원을 단번에 날릴 사상 초유의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오 시장의 ‘벼랑 끝 해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의원은 “서울시 재정을 봤을 때 대규모 예산이 드는 주민투표까지 부처 반대해야 할 사안인지 앞뒤가 안 맞는다”며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서울시 당 쪽과 거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중략)

주민투표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60~70일의 긴 여정이 남아 있다. 서명부 검증을 통해 중복 서명자, 타 시·도 거주자 등을 걸러내고, 이의신청, 주민투

표청구심의회 개최, 공표 등을 거쳐야 한다. 80만여 명의 서명부를 검증하려면 공무원 200명이 꼬박 5일 동안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름휴가 기간 등과 겹쳐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율이 주민투표권자 총수(2010년 기준 836만명)의 3분의 1인 278만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는 위 기사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서울지역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 8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공식 청구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이에 따른 향후 일정과 절차 및 전망, 정치권 반응을 두루 묶어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182억 들여 ‘무상급식 투표’…오세훈의 몽니」라고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을 담아 큰 제목을 달았다.

‘몽니’의 국어사전 풀이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이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는 위 기사에도 소개된 것처럼 올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공포한 데 반발해 주민투표를 제안한데서 비롯됐다. 양측 간 정치적 노선과 신념, 정책적 판단이 치열하게 맞선 끝에 생긴 결과물이다.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의 주체는 서명에 동참한 시민 80여만 명이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주민투표는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몽니’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담아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제목을 단 것은 편향된 시각과 가치판단 때문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0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일보 발행인 이 근 학

〈주 문〉

서울일보 2011년 9월 1일자 14면 「먹을수록 해로운 건강식품/KT&G 자회사 ‘보움’ 제품 금지 약재 포함 논란」 제하의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서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최근 KT&G의 자회사인 KGC라이프엔진에서 설립한 브랜드 ‘보움’이 국제적으로 모유수유 중 임의투여가 금지된 약재를 넣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참의료실천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이 이 제품들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고, 특히 모유수유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산모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에 임신부에게 해로운 약재를 넣어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속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KGC라이프엔진은 ‘생활한방스토어’라는 컨셉으로, 건강식품 프랜차이즈 브랜드 ‘보움(BOUM)’을 런칭, 지난 8일 서초동에 1호점을 개장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가 만든 제품 중 ‘모유수유를 준비하는 엄마를 위한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명가의 지혜를 담은 산모 보움액’ 등의 2개 제품에 안전성 문제가 있어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가 밝히면서 일반인들의 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병대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은 “명가의 지혜를 담은 산모 보움액’과 ‘엄마에게 필요한 아기사랑 보움환’은 둘 다 보허탕이라는 산후 한약을 기본으로 약재를 더하거나 뺀 처방이다”면서 “그러나 이 약재는 한의사의

진단 없이, 어혈이 있거나 간기 울체된 산모에 적용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재이며 특히 민들레와 황금은 유방염 초기에 잠깐 사용해야 하는 약인데 식품으로 장복했을 때는 독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략)

한편 일부에서 KGC라이프엔진이 대기업인 KT&G의 계열사인테다 매장 내 ‘한의원’을 입점시켜 영업한다고 알려진 데 대해 ‘대기업인 KT&G가 의료인을 앞세워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열을 올린다’는 시선이 있다.

이에 대해 KGC라이프엔진 측은 “회사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KT&G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략)

한편 참의료실천연합회의 이진욱 회장은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가 있어 한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한약재이지만, 식품으로도 유통될 수 있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면서 “선진국처럼 ‘임산부, 모유수유 중 엄마, 만성질환자, 영유아와 노인’ 복용에 대하여 따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더 나아가 전체적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식품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모유수유 중인 산모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 장복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한약재가 함유된 건강식품이 최근 대량 시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속과 시정이 필요하다”는 한의약계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 건강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해당 업체의 해명이나 반론은 물론 유관기관인 식약청의 의견과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떠난 의약계의 객관적인 견해를 들어 지면에 반영했어야 마땅한데도 위 기사는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먹을수록 해로운 건강식품>이라는 큰 제목도 기사 본문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기사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 및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2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주문〉

서울경제 2011년 10월 11일자 1면 「“국회 때문에 병원 하나 못 짓다니…”」  
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10월 11일자 11면 「軍 초급간부들 자살로 내몰린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와 헤럴드경제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국회에서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 프로젝트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초강수를 뒀다. 관련 법 개정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투자유치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급기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의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더 이상 법안 통과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가 유치한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몰려 현행법의 하위 규정이나 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후략)』

# “국회 때문에 병원 하나 못짓다니...”

## 송도국제병원 설립 법안 처리 3년 넘도록 허송세월

인천경제청 “자칫 해외투자자까지 놓칠판”  
“정부 통해 하위 시행령이라도 개정할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회에서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 프로젝트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초강수를 뒀다. 관련 법 개정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투자유치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급기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의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

일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서 긴급 기자회견회를 열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더 이상 법안 통과안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가는 유지한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몰려 현행법의 하위 규정이나 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하위 규정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 의

료기관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허가요건이나 세부절차와 운영 등의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세부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정부와 의원 입법으로 연거푸 개정 발의됐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에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청장은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두 번씩이나 해외투자 유치가 무산됐을 5월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ISH 글로벌 컨소시엄과의 투자시한도 올해 말에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며 “사업이 반복적으로 무산될 경우 해외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지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병원은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국내 증권사 및 건설회사가 1조원 가량을 들여 병원을 짓고 이후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을 마련해놓았다.

이 청장은 “현재 논의 중인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허용되는 형태라서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단 사업 허가와 관련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마련하고 향후 병원 건립에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 완벽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정일기자 hanu1@sed.co.kr  
▶황정민기자 garden@sed.co.kr

〈서울경제 2011년 10월 11일자 1면〉

(헤럴드경제)=『지난 8월 10일 해병대 2사단 한 부대의 독신 장교 숙소에서 임관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김모(25) 소위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숙소에서는 김 소위가 쓴 유서가 나왔다. 대학졸업 후 사관후보생으로 해병대에 입대한 김 소위는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육군 모 부대 소속 조모(25) 중사가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전북 임실군 군수사령부 예하 6탄약창에 근무하던 A(26) 중위가 부대 내 간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군의 근간인 초급간부(하사·중사·소위·중위·대위) 자살자가 한 해에 20명에 달하고, 100여명은 탈영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군이 흔들리고 있다. 일반 사병뿐 아니라 초급간부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기사는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다 보니 법률개정을 추진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접근 방법을 바꿔 관련법의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송도 국제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르기 때문에 그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여야 정당의 법률개정안 검토작업, 여론수렴 등 여러 복잡한 절차가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의 제목은 마치 ‘국회가 금방이라도 쉽게 지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병원 하나도 짓지 못하게 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는 사안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단순화한 제목이며 이런 경우 단순화는 일종의 과장이다. 물론 제목으로 뽑은 인용 문구는 기사 본문에 없는 내용이다.

또 헤럴드경제 기사는 軍내에서 초급간부들의 자살이 연간 20여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내용이다. 자살의 동기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 ‘군 초급간부들 자살로 내몰린다’라고 뽑았다. 기사 본문에도 없는 이 같은 제목은 ‘軍 초급간부라면 누구나 타의나 주위 환경에 의해 자살을 하게끔 돼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어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48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 〈주문〉

헤럴드경제 2011년 11월 2일자 10면 「지구 온난화…복상하는 사과재배/‘남한 사과’가 사라진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앞으로는 경북 안동 대신 ‘북한산 사과’가 유명세를 탈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로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하면 남한 재배 사과의 대부분을 북한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외 대북 지원단체가 1990년대부터 펼친 북한 사과나무 심기 운동이 북한 당국의 식량난 타개 의지와 맞물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대북 지원단체와 국내 연구진은 2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1 대북 지원 국제회의’에서 북한 농업 복구와 식량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의 국제 구호단체 머시코(Mercy Corps)의 데이비드 오스틴 북한사업 담당관은 “지난 7년간 황해남도 과일군에 있는 사과 과수원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결과, 최근 사과산업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머시코가 지난 2004년 북한에 보낸 사과나무 근경 1만개는 최근 90만그루의 사과나무로 번식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봄 동일한 근경 10만개를 추가로 지원했다. 홍수 예방과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는 북한의 사과나무는 특히 날씨가 따뜻하고 홍수 피해가 잦은 황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 (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사과재배지역이 점차 북상, 이제 북한지역에서도 사과를 재배해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북한지역에서 이제 사과 재배에 성공했다고 해서 곧 남한 지역의 사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는 과장해 <‘남한 사과’가 사라진다고> 제목을 달았다.

이는 기사 본문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49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1년 11월 8일자 A2면 「박원순 시장 황당한 ‘FTA 의견서’/“지 자체 ISD 해소 우려” → 전문가 “직접 대상 아니다”/“車 세율 인하 보전해야” → 정부 “이미 시행령 개정기로”」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7일 중앙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 대책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한·미 FTA가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를 통해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위 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박 시장이 의견서를 통해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ISD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황당한’이라는 자극적인 수식어를 붙여 「박원순 시장 황당한 FTA 의견서」라고 단정적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는 박 시장의 의견서에 대한 몇몇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의견서를 ‘황당하다’고 규정할 만한 객관적인 논리나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선입관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50 신문윤리강령 위반

#### 경향신문 발행인 송영승

#### 〈주문〉

경향신문 2011년 11월 9일자 2면 「‘이승만 독재’ ‘5·18 민주화 운동’ 교과서에서 사라진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이 모두 삭제됐다. 정부 수립 직후 친일파 청산 노력과 관련된 부분도 사라졌다. 반면 역사교과서 논란을 촉발시킨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역사·국어·도덕·경제 과목의 중학 교과서 집필기준을 8일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독재 부분을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중략) 역대 정부의 공과를 서술할 경우에는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한다’고만 언급했다.

기존 집필기준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부정선거 등에 맞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정부를 세운 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1인 장기집권 체제를 성립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유신체제가 무너진 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을 명시했으나, 이 부분도 새 집필기준에서는 삭제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부분은 아예 사라졌다.

반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50)이 지난 8월 역사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에서 무단 변경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대로 유지됐다.

역사학계에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부분은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문구로 남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중학교 교과서는 2013년부터 사용된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1월 8일 확정해 발표한 중학 교과서 집필기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승만 독재’ ‘5·18 민주화 운동’ 등 기존 집필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됐던 역사적 사실과 사건이 새 집필 기준에는 빠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기사 큰 제목은 「‘이승만 독재’ ‘5·18 민주화 운동’ 교과서에서 사라진다」고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이승만 독재’ ‘5·18 민주화 운동’ 등은 새 중학교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을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집필기준에 특정 사실과 사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 기사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인데도 제목은 교과서에서도 그 사실과 사건을 볼 수 없을 것처럼 한 발 더 나아가 버린 것이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육내용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에 고려해야 할 최소한 기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집필기준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과서에도 안 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과학부의 설명이다.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예단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수 있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75 신문윤리강령 위반

####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 〈 주문 〉

朝鮮日報 2011년 12월 6일자 A16면 「시의회 예결위 “박시장의 무차별적 복지 반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 1. 朝鮮日報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7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복지 사업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중 상당수는 박 시장의 ‘무차별적 복지예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예산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최근 제출한 ‘검토보고서’는 “내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조1646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지난해(4조5601억원)에 비해 6045억원(13.3%) 증가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은 680억7400만원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은 140억7300만원 ▲하수시설관리는 17억1700만원이 각각 줄었다”고 지적했다. 무차별적인 복지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등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시가 148억1400만원을 보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 ◇ 무차별적 복지예산 견제 예고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의 지적 외에도 예결위 소속 시의원들은 박 시장의 내년도 예산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행자 의원(민주당)은 “사회복지만 복지가 아니라 터널사업 같은 교통사업도 보편적 복지”라며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이 새롭게 추가하는 복지 사업의 실제 수혜자는 전체 시민의 20% 범위 내로 100% 시민이 혜택받는 복지가 아니다. 교통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인데 이런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미루면서 선별적 복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성 의원(민주당)은 “(복지 예산을) 무조건 많이 주는 건 좋지 않다. 쓸 수 있는 데 적절하게 줘야 한다”며 “박 시장의 복지 사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 아직 시의회의 공감을 받지 못한 만큼 예산안을 냉정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이 의원은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구체적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판단돼 상임위에서 30%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서영진 의원(민주당)은 “복지예산 중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공립어린이집처럼 너무 성급한 예산도 있다”고 말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복지 사업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에 대해 서울시의회 내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그 같은 의견을 비쳤으며 朝鮮日報의 취재에 응한 일부 의원들도 박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해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은 기사 내용과 달리 아예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 자체가 ‘박시장의 무차별적 복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이 기사가 나간 시점에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아직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박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해 이 같은 전체 의견을 낸 적도 없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76 신문윤리강령 위반

####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 〈주문〉

문화일보 2011년 12월 6일자 4면 「“對與공세 이렇게…”」 사진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문화일보는 위 사진에 대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표(왼쪽)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 테러 진상조사위원회’ 백원우 위원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고 설명을 붙였으나 제목은 <“對與공세 이렇게...”>라고 달았다.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정국 이슈로 부각되기는 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 당직자들의 대화는 여권에 대한 공격이나 흠집내기가 전부인 것처럼 느끼도록 추측성 제목을 단 것은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2년 2월 29일자 A4면 「작년 강원지사 補選, 엄기영 펜션콜센터 사건 진실은.../“엄기영 선거운동원으로 민주당원이 잠입했었다”/선관위 직원 “올해는 더 할 듯”」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朝鮮日報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엄기영 후보 사(私)조직이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해,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이 당 관계자를 전화운동원으로 위장 잠입시킨 것으로 보이며, 기자들을 미리 불러놓고 선관위에 제보를 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강릉시 선관위 소속 강모씨는 선거를 닷새 앞둔 4월 22일, 엄 후보 측의 불법 전화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강릉의 한 펜션으로 출동했다. 강씨는 “당시 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 등이 경찰과 선관위에 동시에 제보하고 감독관처럼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MBC 취재팀까지 대기하고 있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언론홍보전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강씨에 따르면, 그로부터 1시간 뒤 민주당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 등도 현장에 도착했고 이들은 취재팀과 함께 현장을 덮쳤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원내대표는 현장에 있던 증거물인 후보 홍보 전화 멘트를 적은 종이를 들고 읽으면서 카메라 기자에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후 조사를 통해 민주당이 당 관계자를 엄기영 후보의 전화운동원으로 위장 잠입시킨 정황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제보자를 엄기영 후보 사조직의 전화운동원으로 위장 잠입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은 “제보를 받고 3일간 잠복 끝에 현장을 적발했다”고 했지만,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었다.

강씨는 이 같은 내용을 29일 ‘선관위 여성공무원 조사·단속 실무교육’에서 발표한다. 강씨는 사전에 제작된 교육 자료에서 “이 사건이 선거 판도에 미친 영향을 볼 때,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도 정당의 제보 봉사자들의 활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은 위 기사에서 지난 해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사조직이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강모 씨가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이 당 관계자를 전화운동원으로 위장 잠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해 4월 22일 제보를 받고 강릉의 한 펜션에 출동했을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과 MBC 취재팀이 이미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언론홍보전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사에 소개된 강 씨의 발언은 “위장 잠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가 뒷부분에서는 “위장 잠입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로 바뀌는 등 불분명한 대목이 있다. 전화운동원으로 위장 잠입시킨 사람도 ‘민주당 관계자’에서 ‘제보자’로 달리 표현됐다. 즉 강 씨의 판단이 ‘심증’일 뿐인지, 명백한 근거를 갖춘 ‘확증’인지와 더불어 ‘제보자’가 ‘민주당원’인지 여부도 기사만 놓고 보면 확실치 않다.

그리고 이 같은 판단이 강 씨 개인이 아닌 강릉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엄기영 선거운동원으로 민주당원이 잠입했었다”고 강 씨가 단정적으로 말한 것처럼 큰 제목을 달았다.

총선을 40일 남짓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나온 기사인지라 당사자인 민주당으로서는 반론을 제기할 소지가 큰 데도 불구하고 朝鮮日報은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36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2년 3월 17일자 2면 「케이블 빼곡한 전기실서 발화…보령화력발전소 통제 날아갈 뻔」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인 보령화력발전소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1호 발전기가 발전을 재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소 내 3·4호기도 화재로 전력공급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16일 오전 한 때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상화됐다. 화력발전소 시설 내에서 불이 나면서 발전기 가동이 중단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부실한 발전소 관리로 국내 전체 발전설비 중 8%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전기생산기지가 통째로 멈춰 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15일 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지하 1층 전기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11시간여 만인 16일 오전 10시쯤 완전 진압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는 그러나 “1호기는 가동이 멈췄지만 다른 발전시설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전력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전력예비율도 수급에 문제가 없는 20%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령화력발전소에는 모두 8기의 발전기가 있으며 이날 현재 2호기와 5호기는 화재와는 무관하게 정기점검 등으로 가동을 중지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발전소 화재가 1·2호기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전기실 내부에

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기실 내부에는 발전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케이블을 비롯해 통신케이블, 제어케이블 등 수십만 가닥의 케이블이 지나간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기실 내부에는 수많은 케이블들이 불로 인해 녹아붙어 있어 정확한 발화 지점조차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화재 원인규명을 위해 감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선이나 순간적인 과부하 등 화재발생 요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며 “이 시점에서 정확한 원인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구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구작업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전망하기 어렵다”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관계자도 “1호기의 정상 가동 시점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 3월 15일 발생한 보령 화력 발전소 화재 사고의 해설기사다.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 사이 전력실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1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2호기는 정비를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정지시킨 상태였으며 3·4호기는 전력공급선이 화재의 영향을 받아 한때 가동이 중단됐으나 곧 정상화했다. 전체 8호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질없이 가동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이 같은 사실과 다르게 “...국내전체 발전설비 중 8%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전기생산기지가 통째로 멈춰 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목은 <보령화력발전소 통째 날아갈 뻔>이라고 실제 상황보다 부풀렸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 ▲ 2011-1226 신문윤리강령 위반

####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 <주문>

朝鮮日報 2011년 10월 6일자 1면 「또 희생양된 北 경제사령탑/‘임격정’ 쓴 홍명희 손자 홍석형도 숙청당했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임격정’을 쓴 벽초(碧初) 홍명희 전 북한 내각 부수상의 손자로, 북한의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해 온 홍석형(75·사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겸 경제 비서가 숙청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홍석형이 지난 6월 모든 직위에서 돌연 해임된 뒤 행방이 묘연하다”며 “숙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첩보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도 “평양에선 홍석형이 지난 6월 중국의 첩자 혐의를 받고 숙청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홍석형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작년 초 총살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의 후임으로 작년 7월 당 계획재정부장에 기용됐다. 같은 해 9월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과 경제비서에 동시에 오르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끌 인물로 평가받았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朝鮮日報 기사의 제목은 ‘임격정’을 쓴 벽초 홍명희의 손자 홍석형에 대해 ‘숙청당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 본문을 보면 홍석형이 숙청당했다고 단정적으로 제목을 뽑기에는 무리다. 홍석형의 거취에 대한 기사본문의 서술은 <숙청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거나 <“~행방이 묘연하다” “숙청가능성을 시사하는 첩보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숙청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는 등 모두 간접인용문으로 숙청당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제목은 기사 본문을 과장해 단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1월 9일자 3면 「당대표 40억·최고위원 10억 ‘커트라인’ 공공연한 관행」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당 대표는 40억원, 최고위원 커트라인은 10억원』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정치자금 구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비용은 통상 1억원에서 3억원 정도다. 가장 마지막으로 열렸던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당시 한나라당 대표 출마자에게 허용된 비용 상한선도 기탁금 1억2000만원, 기타 비용 2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후보와 함께 전국을 누비는 수십~수백명의 도우미들, 또 각 지역 유세 때마다 버스를 대절해 나타나는 수백~수천명의 열성 지지자들을 보면, 경

선 때마다 수십억원의 돈이 필요함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08년 고 의원이 검찰에서 30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박희태 당시 당 대표 경선 후보는 선관위에 선거자금으로 1억860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공식 선거유인물 제작과 선거용 차량 리스, 일부 유급 봉사자의 인건비로 지출됐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선거 비용일 뿐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 사용한 비용 중, 당규와 선관위 규정에 맞는 것만 역으로 짜 맞춰 신고했다는 것이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돈이 쓰이는 곳은 따로 있다. 바로 선거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인력동원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전대 때 당협위원장에게 봉투를 주는 일은 관행이다. 지방에서 버스 태워 올려 보내는데 차비와 식비는 건네야 하지 않겠느냐. 비공식적으로 어느 당이나 다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각 도별로 열리는 선거 유세전, 그리고 최종 투표를 위해 서울로 집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후보와 시도당협 사이에 돈이 오가는 관행이다.

박 의장이 고 의원에게 준 300만원 역시 친이계였던 고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 구걸이 아닌, 자신을 지지해 줄 당원 동원에 대한 일종의 수고비였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를 전국 200여개 당협위원회로 환산할 경우 최소 6억원이 나온다. 여기에 후보가 직접 챙겨야 하는 행사동원 인력 인건비, 그들이 먹고 자고 쓰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10억원은 가볍게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또 표 관리를 위해 당협별로 1명씩을 지정, 배치할 경우, 이들의 활동비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는 “1등, 즉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구당(당협) 숫자가 더욱 많고, 또 그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40억원까지도 썼다는 소리가 매년 경선 때마다 나온다”고 전했다. 매년 경선 때마다 상당수의 중도탈락자가 나오는 것 역시, 결국 돈이 큰 이유라는 설명이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른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추적·분석한 해설기사로 골자는 기사 리드에 나와 있듯이 ‘당 대표는 40억원, 최고위원 커트라인은 10억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기사 뒷부분에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40억원까지도 썼다는 소리가 매번 경선 때마다 나온다”는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이 소개됐지만 이는 ‘~카더라’식의 소문을 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도 헤럴드경제는 기사 큰 제목을 「당대표 40억·최고위원 10억 ‘커트라인’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아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기정사실화해 버렸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최고 득표자가 당대표,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위 기사와 제목대로라면 당대표 경선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당락과 순위가 갈렸고, 특히 당대표 당선자는 40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0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도 불법이므로 당대표 경선 출마자 대부분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위 기사가 보도된 시기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이고,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의원의 언급 말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헤럴드경제는 기사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울였어야 했다.

사안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위 기사와 제목은 미확인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보도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제10조 「편집지침」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 기사의 정정

#### ▲ 2011-11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 <주문>

스포츠동아 2011년 4월 22일자 1면 「서태지-이지아 자녀 2명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국의 ‘문화 대통령’이란 애칭으로 불리던 톱스타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드라마 연기자 이지아(본명 김지아·33)와 미국서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은 뒤 이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1월 19일 위자료 5억 원과 5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3월 14일과 이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3차 기일은 5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이지아는 소장에서 “2009년 합의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2006년 미국에서 이혼했고, “당시 이미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맞섰다. 이혼 시기에 대한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은 위자료의 경우 이혼 뒤 3년,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민법상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은 인기 연예인 서태지·이지아 부부의 이혼문제를 1면 머릿기사로 다루면서 통단 제목으로 ‘서태지-이지아 자녀 2명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이혼소송과 관련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자녀가 2명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즉, 키이스트는 “마지막으로 현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기사화된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라고 밝혔다.

위 신문은 이 같은 이지아 소속사의 보도자료 <전문>을 다음날인 23일 22면 하단에 게재했다. 하지만 자녀가 2명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해명에 대해서는 따로 제목을 뽑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보도자료 <전문>을 주의 깊게 끝까지 다 읽어 보아야만 자녀문제에 대한 ‘해명’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사실이 ‘오보’임을 신문사가 의지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형식의 ‘정정 보도’를 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⑤항(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25 신문윤리강령 위반

#####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 <주문>

내일신문 2011년 9월 28일자 6면 「이명박정부에선 육사출신만 장군됐다/늘어난 장군 육사출신 24명, 해공군은 1명씩 늘어/육사·육군 편중 심화…비사관학교 8명 감소」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육사 출신 장군이 무려 24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비육사 출신은 4명이 줄었고, 해군과 공군의 장군은 각각 1명만 늘어, 군의 장군 분포에서 육군·육사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국회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2007~ 2011년 육해공군 영관급 이상 장교의 출신비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육군이 20명, 해군 1명, 공군 1명 등 모두 22명이 늘어났다. 전체 장군 정원이 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육사 출신 장군이 24명이 증가한 반면, 비육사 출신은 4명이 감소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육군, 그 가운데서도 육사 출신만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말 기준 육사 출신 장군이 226명(76%)이었으나 올해는 250명(78%)으로 24명이 증가했다. 비육사 출신은 73명에서 69명으로 4명이 줄어들었다.

해군의 경우 해사 출신 장군이 2007년에 56명 가운데 55명이었으나, 올해는 54명을 모두 독식하고 있었다. 해병대는 3명이 늘어난 17명의 장군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6명이 해사 출신이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위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육사출신 장군은 24명이 증가한 반면 비육사 출신은 4명이 줄었고 해군과 공군의 장군은 각각 1명만 증가해 군의 장군 분포에서 육군·육사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보도했다.

기사 내용을 취합해보면 육군 장군은 2007년 말에는 299명으로 육사출신은 226명, 비육사 출신은 73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319명으로 늘어났고 이들 가운데 육사 출신은 250명, 비육사 출신은 69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편집자는 「이명박 정부에선 육사출신만 장군됐다」라고 기사에도 없는 내용으로 큰 제목을 달아 비육사 출신 장성 진급자는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다.

국방부는 위 기사가 나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비사관학교 출신 장성진급자는 육군에서 2008년 12명, 2009년 14명, 2010년 15명이고 해·공군에서는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1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2007년 이후 장군의 정원은 변동이 없다”며 위 기사에서 비교의 기준으로 삼은 2007년 육군의 장군 수는 12월 31일 현재 보직인원이지 만 2011년 장군 수는 7월 25일 현재 보직인원이라고 지적하고 “7월 말에는 신규진급 장군이 많은 데 비해 8·11월에는 전역하는 장군이 많다는 점을 기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일신문은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는데,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⑤항(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46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 〈 주문 〉

파이낸셜뉴스 2011년 11월 2일자 1면 「떼쓰면 통하는 사회/골병드는 한국 경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 이유 〉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한국 경제가 “떼를 쓰면 통한다”는 이른바 ‘떼법’ 논란으로 휘청이고 있다. ‘떼법’이란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 주장을 펼치거나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를 빗대서 만든 신조어다. 이 같은 논란이 금융, 산업, 정치권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신용카드사들 간에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카드수수료' 문제가 중소기업들의 거센 시위로 인하여요구가 관철되자 이젠 립살롱, 마사지업 등 유흥업소까지 나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무산되면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본문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무산되면 서>라는 오보를 냈음에도 이를 즉시 정정하지 않아 보도기사의 정확성은 물론 신문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⑤항(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22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1월 31일자 1면 「조선시대 평균 키 北주민보다 컸다」 기사와 제목, 2월 6일자 10면 「SK 세무조사 무마 로비 31억 수뢰 이희완<서울 국세청 前 국장> 기소」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월 31일자)=『키는 유전과 경제력의 함수관계인가.

최근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 황영일·신동훈 교수팀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시대 116명(남 67명, 여 49명)의 유골을 조사해 얻은 우리 조상

의 평균키는 남성 161cm, 여성 149cm로 현재 한국인 평균키(남 174cm, 여 160.5cm)와 비교해 각각 12.9cm, 11.6cm가량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골에서 채취한 넙다리뼈(대퇴골)를 통해 우리 조상의 평균키를 광범위하게 분석한 첫 연구결과로, 미국 자연인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최신호에 실렸다.

조선시대와 현재의 현격한 키 차이는 영양상태와 질병 등 보건위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는 같은 시기 동·서양인의 평균 신장의 증가속도의 차이로도 드러난다. 조선시대 남성의 평균키는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 크게 작았다. 서구 국가의 평균신장은 19세기 초 산업화와 함께 일시적으로 급신장했으나, 조선은 개화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져 19세기 말에 비로소 근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해석했다.

같은 민족임에도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현재 평균신장이 조선시대보다 못한 158~164cm라는 사실도 키와 영양상태의 관련성을 입증해준다.

그럼에도 키를 좌우하는 바탕은 유전적이었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의 키는 일본인보다 6cm 이상 컸다. 연구팀이 제시한 일본 측 분석자료에 따르면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시대까지 일본 남성의 평균키는 154.7~155.1cm에 불과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작다’는 뜻에서 ‘왜(倭)’라고 부른 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셈이다. 경제력이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현재 키는 남자 170.7cm, 여자 158.0cm로, 여전히 아시아권에선 한국인이 가장 큰 키를 자랑한다.』

(2월 6일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SK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지방국세청 전 국장 이희완(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6월 명예퇴직 직후 SK그룹 비상임고문을 맡아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담당 국세청 직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세액을 줄여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이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무시하고 고문직을 수락했으며, 그 대가로 SK그룹 측으로부터 총 31억5000여만원과 차량 및 비서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이 씨는 1996년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K그룹 측과 교분을 맺기 시작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SK 관련 세무조사와 밀접한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1월 31일자> 기사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살았던 조선시대 조상의 평균키가 남성은 161cm, 여성이 149cm이며 이같은 신장은 현재의 북한주민 평균키보다 큰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조선시대 사람 평균 키와 현재의 북한 사람 평균 키를 비교하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위 기사는 현재 북한 사람들의 평균 키가 158~ 164cm라고 지적했는데 평균키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이처럼 폭넓게, 그것도 남녀 구분없이 산정한 것은 평균치로서 의미가 없다. 또 위 기사가 현재 북한 주민 평균키의 최대치로 제시한 164cm는 조선시대 남성의 평균키인 161cm보다 크기 때문에 <조선시대 평균 키가 북한 주민 평균 키보다 크다>는 기사와 제목은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다.

<2월 6일자> 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던 이희완 씨가 퇴직 후 SK그룹 비상임 고문을 맡고나서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때면 감당 국세청 직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정세액을 줄여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완 씨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명목으로 SK 그룹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다고 위 기사는 전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제목은 이 씨의 혐의에 대해 ‘수재’가 아니라 ‘수뢰’로 표현했는데 이는 기사의 내용과 다를 뿐더러 수재와 수뢰는 엄연히 그 개념이 다르다. 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한 때에 성립하고 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 요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위 기사들의 제목은 즉각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⑤항(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23 신문윤리강령 위반

##### 국민일보 발행인 조 용 기

###### 〈주문〉

국민일보 2012년 1월 27일자 8면 「콘택트렌즈 용액 일부 ‘비소’ 검출/부산 Y, 24개 제품 분석/3개 제품서 기준치 5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판 중인 일부 콘택트렌즈 용액에서 중금속인 비소(As)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정밀 점검에 들어갔다.

부산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7~12월 부산지역 76곳의 안경점과 약국에서 구입한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제품 24개를 한국소비자원 시험분석국을 통해 성분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비소가 0.008~0.053mg/kg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현재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관련 안전기준은 없으나 용액의 주재료에서 먹는 물(수돗물, 샘물) 비소 기준인 0.01mg/L을 최대 5배 초과하는 수치다. 비소에 과다 노출될 경우 독성작용에 의해 안구의 각막신경이 손상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고가 있다.

수소이온농도(pH)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pH 8.9로 인공누액과 세안약 기준 pH 5.5~8.0을 넘어섰다. 미생물 검사와 보존제 분석결과는 조사제품 전부에서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가 검출된 제품 중 1개는 검사 3개월 전에도 검출돼 제조업무 정지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불량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YMCA 황재문 간사는 “콘택트렌즈 관리용액의 시험항목 중 수소이온농도(pH)와 중금속(유해원소) 함유량은 국내에 별도의 표준제조기준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부산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 해 부산지역에서 구입한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제품 24가지를 성분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가 0.008~0.053mg/kg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현재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관련 안전기준은 없으나 먹는 물(수돗물, 샘물) 비소 기준인 0.01mg/L을 최대 5배 초과하는 수치>라고 지적하고 <비소에 과다 노출될 경우 독성작용에 의해 안구의 각막신경이 손상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기사 내용 중 <먹는 물 비소 기준>이라는 전제를 생략한 채 「3개 제품서 기준치 5배」라고 무엇이 기준인지가 모호하게 소재목을 달았다.

기사는 특히 <비소가 검출된 제품 중 1개는 검사 3개월 전에도 검출돼 제조업무 정지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위 기사가 나온 후 “문제의 비소 검출량은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 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보면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몸무게 60kg인 성인이 해당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하루 두 번씩 일주일간 사용했을 때 노출되는 비소의 양은 0.0742ug으로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의 0.008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1개 제품이 비소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해당 제품은 원료 및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비소 기준 초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콘택트렌즈 용액 사용자라면 누구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설사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의 발표라고 하더라도 전문기관이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마땅했지만 취재기자는 이를 생략했다.

국민일보는 또 식약청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 잡아 추가로 보도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 「편집지침」 ⑤항(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4. 관계사진 게재

##### ▲ 2011-119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남매일 발행인 박 태 흥
2. 전북중앙신문 발행인 이 창 승

##### 〈주문〉

경남매일 2011년 8월 8일자 3면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 청문회」 제하 기사의 관련사진, 전북중앙신문 8월 10일자 3면 「“지명직, 호남-충청 각각 한 명씩”/박근혜, 홍준표 정면 반박 ‘호남 공들이기’ 분석」 제하 기사의 관련사진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경남매일은 연합뉴스가, 전북중앙신문은 뉴시스가 각각 제공한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제했다.



〈전북중앙신문 2011년 8월 10일자 3면〉

또 경남매일은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7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관련사진의 설명문을, 전북중앙신문 역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이하 생략)’는 사진설명문을 각각 게재하고 있으나, 이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달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제10조 「편집지침」 ⑥항(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